

인천지방법원 2023. 10. 17 선고 2023가단21859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유병일, 방인석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3. 9. 12.
판 결 선 고 2023. 10. 1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22. 3. 3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인천지방법원 2022. 3. 31. 접수 제10460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6.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C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을 164,800,000원, 보증기한을 2018. 3. 5.까지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후 보증원금은 108,800,000원, 보증기한은 2023. 3. 2.까지로 각각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나. C는 2017. 3.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6,000,000원을 대출받았고, 당시 C의 대표이사였던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C의 국세 체납 등으로 2022. 3. 28.경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B는 2022. 3. 30. 여동생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5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주기로 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라 피고 명의로 마친 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같은 달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C의 국세 체납 등을 원인으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사전구상채권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 명령과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신용보증사고 발생 무렵 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의 규모와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참조). 따라서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B은 2016. 6.경부터 2017. 12.경까지 피고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렸다가 피고에게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조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B의 피고 등으로부터의 차용일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일에 앞서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로 평가되는 것은 B이 피고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행위가 아니라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채무자인 B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B이나 C의 재정상황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와 B은 가족으로서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점, ② 피고는 B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비로소 B과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점, ③ 피고 스스로도 사업 운영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만으로는 수익자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준규

별지